



事例 중심으로 본 환경보전 법규 질의·응답 해설(연재 I)

배출업체의 기업주와 환경관리인, 환경관계자들이 법해석과 운용 면에서 겪은 어려움을 환경청에 질의한 내용과 그 회신내용을 발췌해 사례별로 엮어 본다. (편집자 主)

I. 면도기 생산공정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1. 사례내역

1. 질의 및 회신 근거

질의 : 성동구 성수동 2가

안전사(주) 대표 이호웅

회신 : 수관 01254-12328 ('87.12.26)

2. 질의 내용

- 면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공정으로 아래와 같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폐기물배출시설중에 마. “가공금속제품, 기계 및

* 시설내역

| 명 청 | 규 격 | 수량 | 비 고 |
|----------|----------|-----|------------|
| 표면처리시설 | 용적 80 리터 | 3 대 | 사 용 |
| 세척시설 | 용적 5 리터 | 2 대 | 수 량 시간당 |
| 수동식 현상시설 | 용적 2 리터 | 3 대 | 20리터 |

2. 해 설

가. 배출시설의 정의

환경보전법 제 2 조 제 11 호에 의하면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수질·토양을 오염하거나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

장비 제조시설”에 포함되는지? 또 포함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면도기 생산공정의 시설을 검토한 바, 동 시설이 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2의 폐수 배출시설중 구분된 마. “가공식품제품기계 및 제비 제조시설”과 벼. “사진처리시설”에는 해당되나, 각 시설의 규모가 동 규칙 별표 2의 “폐수 배출시설” 시설합계란에서 정한 규칙 이하이므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참조 조문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3 조(별표 2)

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배출시설 지정의 중요성

배출시설이라 함은 본래 생산시설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시설이지만, 이러한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오염물질(이른바 공해)도 동시에 생산된다. 그러므로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생산시설을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생산시설이 되어야만 배출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품의 생산이나 영업활동 이외의 정부나 사회단체의 활동에 수반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도 배출시설이 될 수 있음을 물론이나 그 비중은 매우 적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시설이 모두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설생산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법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의 단점은 천태만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시설 중에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확히 선별해 내는 작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별이 잘못될 경우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국민경제나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배출시설을 엄격하게 열거하지 않고 공장설립시 각 사례별로 배출시설 해당여부를 그때 그때 심사결정하는 나라도 있다.

여하튼 일단 어떠한 생산시설이 법규에 의하여 배출시설로 정해지면, 공장의 설치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공해관련 법규에 의하여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기업의 제품생산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다. 배출시설의 종류

배출시설은 1978년 최초로 보사부령 제3조 별표2에 열거된 이래 1차 보사부령 개정시(87.1.7.)에 축산시설·기타시설 등이 새로운 배출시설로 추가되었으며, 이후 제7차 개정(87.8.3.)에 이르기까지 정수시설, 폐수처리시설을 비롯한 많은 시설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공정도 점점 다양화·다기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배출시설 범위의 개정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산업(보사부령 제3조 별표2) 분야에는 대부분하여 가스·입자상 오염물질 및 악취에 15개 분야, 소음공해에 4개 분야, 진동 및 폐수공해에 25개 분야가 있다.

라. 배출시설 해당요건

(1) 보사부령 제3조 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물 해당여부

어느 생산시설이 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산업분야에 속한다 할지라도 업종별 또는 공정별로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배출시설이 될 수 있는 업종이나 생산 공정을 보사부령 제3조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되어야 한다.

(2) 보사부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여부

“가” 항에 해당하는 산업이나 공정에 속할지라도 보사부령 별표1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실제로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만이 배출시설에 해당된다.

법규상 배출시설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화학제품 제조·경제 시설중 비료 제조시설, 염료·안료·도료 등 제조시설”하는식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위의 범주에 해당되는 시설일지라도 실제로 전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만일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산업분류에 의한 배출시설 해당업종에 속할지라도 배출시설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경우 규제대상물질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시설을 배출시설로 지정한다 해도 환경보전법규에 의한 통제 및 관리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나, 동 오염물질을 제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환경에 직접 방류시키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사부령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이상 모두 배출시설로 처리하며, 다만 재생이용 등에 대하여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해당여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일지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정 유해물질 등 악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시설 등의 경우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배출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악성이 아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소규모시설의 경우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소량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경미함으로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어느 산업용화학제품 제조 사업장의 세척시설이 배출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동 사업장에 있는 모든 세척시설의 시설합계가 용적 1m^3 이상이 되거나 또는 용수량이 시간당 0.5 톤 이상되어야 한다.

실제로 보사부령 제 3 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을 살펴보면 가스·입자상 물질 및 악취 배출시설의 경우와 금속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및 금속 표면 처리시설 등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에 한하여 배출시설로 인정하고 그이하인 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 그러나 염소·불소·인·황 및 그 화합물의 제조·정제시설, 석유정제시설, 시멘트 또는 석회 제조시설 등은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배출시설로 처리하고 있다. 수질분야의 폐수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분야의 공해에 대하여는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한하여 배출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마.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본 사례에서 제시된 생산공정중 표면처리시설 및 세척시설은 보사부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배출시설 분류항목 중 가공금속 제품·기계 및 장비 제조사설에 해당하고, 수동식 현상시설은 사진처리 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질의 한 생산공정 중의 시설들 모두가 일용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첫번째 요건은 갖춘 셈이 된다.

두번째 요건은 오염물질이 동 시설에서 실제로 배출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질의내용에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용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세번째 요건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해당되느냐 여부이다. 보사부령 제 3 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규모는 표면처리 시설의 경우 최소용적 규모가 1m^3 이상이나 본건의 경우 시설합계가 0.24m^3 ($0.08\text{m}^3 \times 3$ 대)에 불과하고 세척시설의 경우도 최소용적 규모가 1m^3 이상이나 본건의 경우 시설합계 0.01m^3 ($0.005\text{m}^3 \times 2$)에 불과하므로 모두 일정 규모 이상에 미달한다.

수동식 현상시설의 경우는 최소 규모가 자동식 필름 현상시설 1세트 이상으로 되어 있는바, 본건의 경우 역시 이에 미달한다.

결론적으로 본건의 경우 시설규모 기준미달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우리모두 환경보전

- 공장·세차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는 깨끗이 정화합시다.
- 정화조는 반드시 1년에 한번씩 청소합시다.
- 합성세제는 포장지의 표시에 따라 알맞게 사용합시다.
- 음식찌꺼기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따로 싸서 버립시다.
- 하천이나 빙터에 오물을 버리지 맙시다.
- 자연보호에 적극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을 이룩합시다.